

■ 용어 해설

개토제(開土祭)	땅을 파기 전에 토지신(土地神)에게 올리는 제사.
건물지(建物址)	건물이 있던 터.
경작유구(耕作遺構)	옛 사람들이 경작하던 논·밭 등의 농경지 유구.
고고학(考古學)	과거 인류들이 남긴 잔존물을 통해 과거 문화를 복원하고 그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학문. 과거 인간들의 활동은 반드시 그 잔존물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유물, 유구, 유적 등의 고고학적 자료이고, 이 물질적인 잔존물을 통해 고고학의 연구가 이루어짐.
고상가옥(高床家屋)	바닥이 지표면에서 떨어져 지어진 집. = 고상식건물.
고토양층(古土壤層)	오래된 토양층. 통상 4기층을 말하며, 구석기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음.
구제발굴(救濟發掘)	발굴을 하게 되는 계기의 하나. 건설공사에 앞서 훼손이 예상되는 유적을 조사하여 최소한의 문화정보를 구제하기 위한 발굴조사.
굴광선(掘曠線)	= 어깨선, 유구의 윤곽선
굴립주건물(掘立柱建物)	=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서 만든 건물
국가귀속(國家歸屬)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국가로 확정시키는 행위.
기록보존(記錄保存)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굴조사를 거쳐 발굴내용을 철저히 기록토록 함. 기록 후 건설공사 진행 가능.
긴급조사(緊急調査)	자연재해·도굴 등 훼손요인에 노출된 중요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발굴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함.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지하 및 해저에 묻혀 있는 무덤, 집터, 패총, 절터 등의 유적과 유물을 총칭. 문화재보호법에 보존·관리토록 규정.
매트공법(Mat-)	지하의 유적을 복토보존하고 지상식 구조물을 짓는 건축공법.
무문토기(無文土器)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표면에 아무런 무늬 없음.
문화유적분포지도(文化遺蹟分布地圖)	전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단위로 1/10,000 지형도 상에 유적이거나 유물산포지 등을 표시한 지도.
문화재보존대책(文化財保存對策)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제거, 감소, 완화)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안을 지칭.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설정한 구역.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관계전문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둠.
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	문화재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관계전문가.
문화층(文化層)	퇴적층 중 유구·유물을 포함하여 옛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층위.
발굴유물(發掘遺物)	발굴조사로 얻게 된 유물.
발굴조사(發掘調査)	시굴조사로 확인된 유구를 정밀조사 하기 위한 굴착조사. 광의적으로 시굴조사(試掘調査)도 발굴조사의 일부임.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함. 고고학사진 : 고고학적 자료를 가장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발굴의 목적은 고고학적 자료를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즉 유물의 경우 출토위치, 출토상태, 공반유물 등과 유구의 경우 출토상태, 유구간의 조합관계, 층서관계 등을 얻고자 함이다. 고고학적 자료가 갖고 있는 3차원적 위치를 최대한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발굴조사기관(發掘調査機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발굴 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발굴조사단(發掘調査團)	개별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집단. 조사단장·책임조사원·조사원·조사보조원·보조원 등으로 구성됨.
발굴조사보고서(發掘調査報告書)	발굴조사의 내용을 사진·도면과 함께 상세히 펴낸 책.
발굴허가(發掘許可)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를 허가하는 행위.
발굴변경허가(發掘變更許可)	기간, 면적 등 발굴조사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일. 절차는 발굴허가와 같음.
보고서(報告書)	발굴(지표)조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도면, 사진 등과 함께 펴낸 책.
보조원(補助員)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보존과학(保存科學)	물질적인 구조와 재질의 변화·노화·붕괴 등의 방지를 연구하는 과학. 주로, 문화재의 보존에 응용됨.
보존조치(保存措置)	발굴조사된 유구에 대하여 보존토록 하는 행정명령. 원형보존, 복토보존, 이전 복원 등.
보존처리(保存處理)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적·유물의 산화·변형을 방지하는 일
보존처리요원(保存處理要員)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의 실질적 책임자.
복토(覆土)	파 놓은 흙을 되메우는 일.
봉토(封土)	고분의 무덤방을 덮기 위하여 쌓아 올린 흙.
복토보존(覆土保存)	발굴된 유구의 상부에 흙을 메워 유구를 보존하는 일.
부석유구(數石遺構)	돌을 깔아서 조성한 유구.
부장품(副葬品)	무덤에서 시신과 함께 넣은 물건. 꺼묻거리.
분구묘(墳丘墓)	미리 흙이나 돌로써 봉분과 같은 분구를 조성하고 그 위에 매장시설을 만드는 무덤양식.
분묘(墳墓)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땅 속에 파묻거나 일정한 형태로 처리하는 것. = 무덤.
분포확인조사(分布確認調査)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지의 1%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실시하는 굴착 조사. 유) 토층조사, 분포조사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	문화재보호법상 국보·보물·사적·지방기념물 등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사업면적(事業面積)	지표(수중)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지 전체면적. 공원부지, 녹지지역도 사업면적에 포함됨.(사업 인·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면적)
사업부지(事業敷地)	= 사업면적.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말하며,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시공사 등이 발굴허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도 신청자는 시행자가 됨.
석곽묘(石槨墓)	지하에 깊이 움을 파고 자연괴석이나 자갈돌로 직사각형의 덧널을 짠 무덤= 돌덧널무덤. 내부를 돌로 쌓아 관과 부장품을 놓을 자리를 만든 무덤.
석관묘(石棺墓)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다른 시설 없이 관만을 판석형태의 돌로 만든 무덤. = 돌널무덤
석실묘(石室墓)	내부를 돌로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 = 돌방무덤(돌로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올려 봉토를 만든 무덤. 널길이 달려있고 천장구조가 다양하다.

석열(石列)	가지런히 열을 지은 돌무더기.
소규모발굴(小規模發掘)	국가·지자체로부터 발굴비 지원이 가능한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된 일정면적 이하의 발굴조사.(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수혈(竪穴)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
시굴조사(試掘調査)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 유구의 분포 여부 및 범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굴착조사. 조사대상지의 10% 범위 내외의 면적에서 실시하며, 예비조사 성격으로 광의의 발굴조사에 포함됨.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는 일이므로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시굴조사보고서(試掘調査報告書)	시굴조사 결과를 도면·사진 등과 함께 설명하여 펴낸 책.
약보고서(略報告書)	시·발굴조사 완료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보고서.
어깨선	유구의 윤곽선. 주거지의 윤곽선 = 굴광선.
연대측정(年代測定)	유적의 연대를 알아내기 위한 과학적 조사. 탄소연대측정, 고지자기측정 등.
연차발굴(年次發掘)	동일 유적에 대해 연도별로 여러 회에 걸쳐 실시하는 발굴조사.
옹관묘(甕棺墓)	관을 항아리로 만든 무덤.
와관묘(瓦棺墓)	관을 기와로 만든 무덤.
와요지(瓦窯址)	기외를 굽던 가마터. = 기와가마터.
요갱(腰坑)	부장품을 두기 위해 시신의 허리 아래에 판 구덩이.
원형변경(原形變更)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현상변경, 형질변경.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원형보존(原形保存)	문화재 분포지역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행위.
유구(遺構)	유적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표를 변경(성토·굴착)하여 만든 옛 시설물. 주거지, 무덤 등.
유물(遺物)	옛 사람들이 쓰던 물건. 토기, 석기, 철기와 같은 생활도구와 각종 장신구 등.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지표상에 유물편이 드러나 지하에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유적(遺蹟)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 유적>유구>유물
입회확인조사(立會確認調査)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실시하는 굴착조사.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함.
이전복원(移轉復原)	유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복원하는 행위.
자문위원(諮問委員)	= 지도위원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	= 지도위원회
저습지(低濕址)	옛 수로, 논 등의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 늪지대, swampy place.
전사(轉寫)	발굴조사된 유구나 토층을 그대로 본 떠 옮기는 일.
전시관(展示館)	발굴조사된 유구·유물을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
정비목적발굴(整備目的發掘)	유적의 복원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발굴.
제토(除土)	발굴을 위해 유구 상부의 흙을 제거하는 작업. 전면 제토는 조사대상지역의 표면 혹은 전부 제거함(全面除土)
조사단장(調査團長)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조사보조원(調査補助員)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조사원(調査員)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주거지(住居址)	옛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주거의 자취.
주혈(柱穴)	건물, 울타리 등의 기둥을 꽂았던 자리. = 기둥구멍.
지도위원(指導委員)	발굴조사에 대한 조언도 하고 유적의 성격판단, 발굴성과 등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	발굴조사에 대한 조언도 하고 유적의 성격판단 발굴성과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지도위원 회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국보·보물·사적·지방기념물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관리되는 문화재.
지표조사(地表調査)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
지표조사기관(地表調査機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별표 15)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표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책임조사원(責任調査員)	매장문화재 조사구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탄요(炭窯)	숯을 굽는 가마. = 숯가마.
토광묘(土壙墓)	땅을 파고 만든 무덤.
토기(土器)	흙을 구워 만든 그릇.
트렌치(Trench)	발굴조사에서 유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땅을 일정 규격으로 길게 파놓은 도랑, 구덩이. 통상 피트는 점, 트렌치는 선의 개념임.
패총(貝塚)	옛 사람들이 버린 조개무지(쓰레기터). 신석기-삼국시대 주로 생성된 유적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됨.
편년(編年)	유적이나 유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일.
표본시굴조사(標本試掘調査)	지표상에 유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지형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굴착조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조사대상범위의 2%내의 면적을 굴착함.
피트(Pit)	유적의 존재 유무나 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땅을 수직으로 파놓은 구덩이.
학술발굴(學術發掘)	유적의 학술적인 성격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발굴조사.
현장설명회(現場説明會)	유적의 조사 결과를 관련 전문가와 언론, 지역국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현장 공개행사.
현지보존(現地保存)	= 원형보존, 현상보존.
형질변경(形質變更)	= 원형변경.
환호(環濠)	집단거주지나 방어시설 등의 둘레를 파 놓은 도랑. 일종의 방어시설이며, 주로 청동기-삼국시대 유적에 나타남.
회곽묘(灰槨墓)	무덤관의 바깥을 회(灰)로 마감한 토광묘. 주로 조선시대에 많음.
3D스캔(3D-Scan)	유구·유물을 레이저스캐닝(Raiser Scanning)하여 3차원영상으로 구현하는 일.

* 참고 : 『국어사전』, 『한국고고학사전』, [문화재보호법] 등